

공고 영동 제2023-593호

[] 통행의 금지·제한
[] 차량의 운행 제한 **공고**

「도로법」 제76조제1항·제2항, 제77조제1항·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,

제40조제4항에 따라 다음과 같은 이유로 그 **[] 통행의 금지·제한**
[] 차량의 운행 제한 을 공고

합니다.

2023년 4월 24 일



도로의 종류	면도	노선명	101호선
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	도로교통법 제2조 제17항에 따른 모든 차량 및 건설기계	구간	양산면 원당리 6-5번지 ~ 양산면 원당리 51-3번지
기간	2023년 4월 30일부터 2025년 2월 26일까지		

이유

- 원당교설치 공사에 따른 면도 101호선 차단(350m구간)
 - 면도 101호선이용 소형차량은 학산천 좌·우 제방길 및 농로 이용
 - 5ton 이상 차량은(금강로 및 송호로)이용
- * 제방길 지지력 약화 및 도로폭(3m)협소로 5ton이상 차량 통행금지.

첨부서류: 해당 도로에 대한 5만분의 1 이상의 지형도